



제438회국회(임시회)
제1차 정무위원회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검 토 보 고

〈알고리즘 담합 규제〉

■ 김문수의원 대표발의(의안번호 제2218875호)

2026. 8.

정 무 위 원 회

전문위원 구 현 우

목 차

I . 제안경위	1
II .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1
III . 검토의견	2

I. 제안경위

1. 제 안 자 : 김문수의원 등 11인
2. 제 안 일 : 2026. 5. 7.
3. 회 부 일 : 2026. 5. 8.

II. 제안이유 및 주요내용

현행법은 사업자 간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에 대한 합의의 존재를 부당한 공동행위의 요건으로 하면서 합의 존재의 입증상 어려움을 제거하기 위해 일정한 경우에는 합의의 존재를 추정하고 있음.

그런데 최근 사업자들 사이에서 동일한 알고리즘에 데이터를 제공하고 그 결과에 따라 가격 또는 거래조건 등을 설정하는 알고리즘 가격담합이 발생하고 있음. 이러한 담합의 경우 사업자 간 명시적 또는 묵시적 합의의 존재가 있는지 여부, 합의를 추정하기 위한 상호 정보의 공유가 있는지 여부 등이 불명확하여 담합으로 규율하는데 해석상 어려움이 있음.

이에 가격 또는 거래조건 설정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행위의 합의가 있는 것으로 추정하도록 함으로써 새로운 유형의 담합을 명확히 규정하고자 함(안 제40조제5항제3호 신설).

Ⅲ. 검토의견

- 개정안은 여러 행위자가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경우도 공동 행위의 합의를 있는 것으로 추정하여 규제하려는 것임.

현행	개정안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 ④ (생략)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2. (생략) <u><신설></u>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 ④ (현행과 같음) ⑤ ----- ----- ----- ----- ----- ----- ----- ----- ----- 1. 2. (현행과 같음) 3. <u>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때</u> ⑥ (현행과 같음)
⑥ (생략)	

□ 현행법 제40조제1항¹⁾은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담합)를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은밀하게 행하여지는 부당한 공동행위의 속성상 당사자 간 합의 여부를 입증하는 것은 곤란하다는 어려움이 있음.

□ 따라서 현행법 제40조제5항²⁾은 둘 이상의 사업자가 제40조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고(행위의 외형상 일치),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거나(제1호), 제1항 각 호의 행위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 받았을

1)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① 사업자는 계약·협정·결의 또는 그 밖의 어떠한 방법으로도 다른 사업자와 공동으로 부당하게 경쟁을 제한하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이하 “부당한 공동행위”라 한다)하거나 다른 사업자로 하여금 이를 하도록 하여서는 아니 된다.

1. 가격을 결정·유지 또는 변경하는 행위
2. 상품 또는 용역의 거래조건이나, 그 대금 또는 대가의 지급조건을 정하는 행위
3. 상품의 생산·출고·수송 또는 거래의 제한이나 용역의 거래를 제한하는 행위
4. 거래지역 또는 거래상대방을 제한하는 행위
5. 생산 또는 용역의 거래를 위한 설비의 신설 또는 증설이나 장비의 도입을 방해하거나 제한하는 행위
6. 상품 또는 용역의 생산·거래 시에 그 상품 또는 용역의 종류·규격을 제한하는 행위
7. 영업의 주요 부문을 공동으로 수행·관리하거나 수행·관리하기 위한 회사 등을 설립하는 행위
8. 입찰 또는 경매를 할 때 낙찰자, 경락자, 입찰가격, 낙찰가격 또는 경락가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을 결정하는 행위
9. 그 밖의 행위로서 다른 사업자(그 행위를 한 사업자를 포함한다)의 사업활동 또는 사업내용을 방해·제한하거나 가격, 생산량,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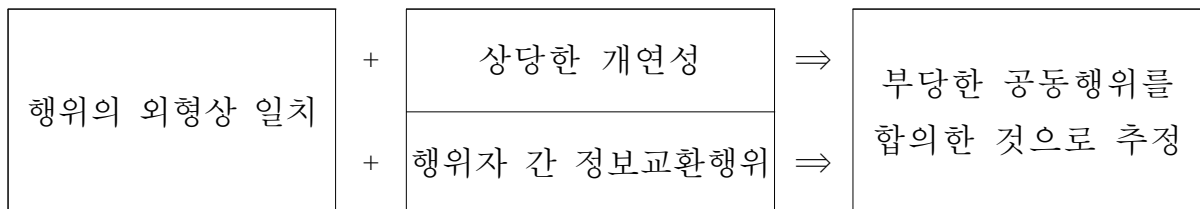
2) 제40조(부당한 공동행위의 금지) ⑤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는 둘 이상의 사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업자들 사이에 공동으로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것을 합의한 것으로 추정한다.

1. 해당 거래분야, 상품·용역의 특성, 해당 행위의 경제적 이유 및 파급효과, 사업자 간 접촉의 횟수·양태 등 제반 사정에 비추어 그 행위를 그 사업자들이 공동으로 한 것으로 볼 수 있는 상당한 개연성이 있을 때
2. 제1항 각 호의 행위(제9호의 행위 중 정보를 주고받음으로써 일정한 거래분야에서 경쟁을 실질적으로 제한하는 행위를 제외한다)에 필요한 정보를 주고받은 때

때(제2호)는 각각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하고 있음.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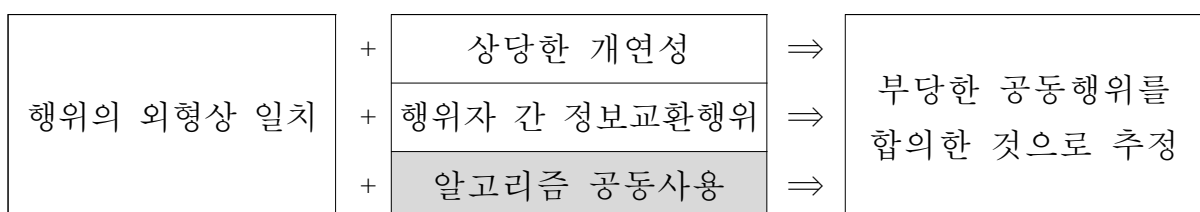
- 현행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추정의 요건이 충족되면 효력이 발생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한 것으로 보게 되므로 행위자들이 추정을 번복하려면 제40조제5항의 요건사실에 대한 반증을 스스로 제시하여야 함(입증책임의 전환).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 추정요건(법 제40조제5항)>



- 개정안은 부당한 공동행위의 합의를 한 것으로 추정하는 요건으로서 행위의 외형상 일치가 있고, 행위자들이 이에 필요한 정보를 활용하여 의사결정을 수행하는 알고리즘을 공동으로 사용한 때를 추가하려는 것임.

<개정안의 합의 추정요건>



□ 이는 디지털 경제의 심화로 가격결정 시스템에 알고리즘을 이용하는 사례가 증가하는 현실에서 기업이 동일한 가격결정 알고리즘을 사용함으로써 부당한 공동행위의 결과와 유사한 형태의 경쟁제한이 발생할 수 있다는 우려에 대응한 것으로 보임.

- OECD가 2025년 발간한 보고서³⁾에서는 전통적인 가격담합의 실행 도구로써 알고리즘이 활용될 수 있고, 알고리즘이 인위적으로 가격 변동성을 만들어내 부당한 공동행위의 사실을 숨기거나 암호화된 메시지 교환에 사용하여 행위자간 의사소통을 은폐할 수 있음을 우려함.⁴⁾

- 미국⁵⁾에서는 통상 서면법 제1호에 따라 알고리즘 담합을 포함하여 부당한 공동행위를 포괄적으로 규율하면서도 뉴욕주, 코네티컷주, 캘리포니아주가 2025년 말 및 2026년 초에 잇달아 알고리즘 담합 규제를 내용으로 하는 주 차원의 법적 근거를 마련한 바 있음.⁶⁾

□ 다만, 부당한 공동행위로 인정되기 위해서는 행위자들의 합의 여부가 중요한데, 현행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의 합의 추정 방식이 알고리즘 공동사용을 배제하는 것은 아니라는 점을 주목할

3) OECD, “Algorithmic pricing and competition in G7 jurisdictions: Emerging trends and responses”, OECD Publishing, 2025. 10. 3.

4) OECD 보고서에서는 이를 뒷받침하는 근거로 영국에서 발생한 Trod-GBE 담합 사건과 미국의 아마존마켓플레이스에서의 포스터 판매업체 간 담합 사건 등을 예시로 들고 있음.

5) 이하 미국의 사례는 아래의 문헌을 참고하여 작성함.

최창수, ‘미국의 알고리즘 가격결정에 대한 독점규제 입법례’, 「최신외국입법정보」, 2026-5호, 국회도서관, 2026. 3. 31.

6) 단, 뉴욕주와 코네티컷주는 주거용 임대시장에 한정하여 적용함.

필요가 있음.

- 즉, 현행법은 행위자들의 합의로 부당하게 경쟁 제한이 발생하였다고 인정되면 이를 부당한 공동행위로 보고 있고, 합의를 추정하는 요건도 행위자들의 합의 의도에 주안점을 두고 있음.

□ 이를 고려하면, 일반적으로 다른 경쟁자의 알고리즘을 확인하기 어려운 산업구조 아래에서 개정안처럼 행위자들이 알고리즘을 공동사용하였다는 사실만으로 합의의 존재 사실을 추정할 경우 법 집행의 왜곡이 발생할 가능성이 있으므로 신중한 접근이 필요함.

- 프랑스와 독일의 공동연구에서도 알고리즘 담합의 핵심 요건으로 행위의 인지여부(awareness of the conduct)를 제시하고 있고, 영국 경쟁청도 단순 알고리즘의 공유만으로는 경쟁법 위반이 성립되지 아니하고 기업들 사이에 경쟁을 억제하려는 의도가 있어야 한다는 내용의 보고서를 발표(2018)한 바 있으며, 일본 공정거래위원회 역시 동일한 알고리즘을 사용하는 기업들의 가격담합에 대한 공통된 합의를 법 위반의 요건으로 보고 있음⁷⁾

□ 이러한 부작용을 고려할 때 개정안에 대해서는 보다 심도 있는 논의가 필요할 것으로 보임.

7) OECD, 위의 보고서, p.8~9

□ 공정거래위원회도 현행법으로 사업자들 간 명시적·묵시적 합의가 있는 알고리즘 담합을 규율할 수 있고, 개정안은 사업자 간 합의 유무와 무관하게 알고리즘 공동사용을 합의의 추정으로 인정하는 것으로 합의 추정의 범위를 지나치게 확장하여 법적 불확실성을 초래한다는 비판적 의견을 제시하였음.

문 의 처
02)6788-5109